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89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허가 없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허가 없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③ ----- ----- -----.
1. (생략)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 1의7. (생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3. ~ 1의8.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7까지와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	⑤ ----- -----

현행	개정안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생략) ⑥ (생략)	-----. <삭제>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사례와 같이, 산불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한 행위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

원인별	최근 10년('15년~'24년)	원인별 비중
합계	545.5건	100%
입산자 실화	171.3건	31.4%
논·밭두렁 소각	60.3건	11.1%
쓰레기 소각	67.5건	12.4%
담뱃불 실화	34.8건	6.4%
건축물 화재	34.2건	6.3%

화목 보일러	24.6건	4.5%
작업장 실화	23.1건	4.2%
성묘객 실화	17.3건	3.2%
기타	34.6건	6.3%
원인 미상	77.8건	14.3%

※ 자료: 산림청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 포함)는 해당 구역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

연도별	전체 산림면적 (천ha)	입산통제구역 면적(천ha)	입산통제구역 비율
-----	------------------	-------------------	-----------

- 1)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020년	6,298	1,510	24.0%
2021년	6,294	1,512	24.0%
2022년	6,291	1,846	29.3%
2023년	6,287	1,853	29.5%
2024년	6,283(추정)	1,880	29.9%
2025년	6,279(추정)	1,897	30.2%

※ 자료: 산림청

입산통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매년 300건을 상회하고 있어 입산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건,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334	26,870	386	28,270	394	32,760	351	28,937	334	28,310	306	26,910

※ 자료: 산림청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산불 방지 관련 ‘대국민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²⁾

이에 개정안은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20만원→100만원)함으로써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의 지정 취지를 살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예방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산불 예방 관련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 부과 규정 】

위반 행위	과태료 상한액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200만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	70만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30만원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은 수생태계와 수산 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입산통제구역 확대하고, 과태료도 높여야...산불 방지 관련 ‘대국민 조사 결과’ 발표”, 2025. 4. 30.

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낚시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 산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3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